

생각함.

다. 안 제2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에 특례가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시 지적으로 다만,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라. 안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 현행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체요율은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연 15%로 적용하는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6항 내지 제8항에서 연체요율을 규정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마. 조례개정의 시점

-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되었고 조례개정은 2003년 3월에 될 경우 그 사이의 매각대금분납금 및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문제는 부칙에서 2002년 11월 29일 이후 최초 납부기간 도래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시점과 관련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함.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 2”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재무국장”으로, “재산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연 8퍼센트”를 각각 “연 6퍼센트”로 하며, 동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사용·수익”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중 “제23조제3항제3호”를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또는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6항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39조제5항제1호중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그밖의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매각대금의 분납금에 대한 이자율은 2002년 11월 29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간이 도래하여 납부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제2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30 ((第140回-行政自治第1次)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료율 및 부과대상기간은 2002년 11월 29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